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 - 건물



[건물]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989-1외 1필지

고유번호 1241-2004-004276

【 표 제 부 】 (건물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 및 건물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2004년5월19일	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989-1, 990	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3층 주택 1층 198.4㎡(다가구주택) 2층 198.4㎡(다가구주택) 3층 136.06㎡(다가구주택)	
2		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989-1, 990 [도로명주소]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남로321번길 47-117	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3층 주택 1층 198.4㎡(다가구주택) 2층 198.4㎡(다가구주택) 3층 136.06㎡(다가구주택)	도로명주소 2012년7월25일 등기
3	2013년9월27일	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989-1, 990 [도로명주소]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남로321번길 47-117	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3층 단독주택 1층 198.4㎡ 2층 198.4㎡ 3층 136.06㎡	건축물대장정비요령에따른 기재사항정비

【 갑 구 】 (소유권에 관한 사항)				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
1	소유권보존	2004년5월19일 제21982호		소유자 김태진 430823-*****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77 호수마을 303동

열람일시 : 2017년02월24일 10시40분44초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				1002호
2	소유권이전	2013년9월25일 제41873호	2013년7월26일 매매	소유자 나광수 640827-*****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65, 736동 1701호 (중산동, 인천영중동보노빌리티아파트) 매매목록 제2013-675호
3	소유권이전	2013년9월25일 제41874호	2013년9월25일 신탁	수탁자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110111-1492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(대치동)
				신탁 신탁원부 제2013-1723호
4	소유권이전	2014년3월7일 제9425호	2014년3월7일 신탁재산의귀속	소유자 나광수 640827-*****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65, 736동 1701호 (중산동, 인천영중동보노빌리티아파트)
				3번 신탁등기말소 원인 신탁재산의귀속
5	소유권이전	2014년3월7일 제9426호	2014년1월27일 매매	소유자 이순례 461202-*****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안길35번길 51-1, 301호 (송의동, 서림하이즈빌) 매매목록 제2014-160호
6	소유권이전	2014년3월7일 제9427호	2014년3월7일 신탁	수탁자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110111-1492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(대치동)
				신탁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				신탁원부 제2014-187호

-- 이 하 여 백 --

관할등기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

열 램 용

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*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 *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없는 갑구 또는 을구는 생략함. *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
열람일시 : 2017년02월24일 10시40분44초

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
[주의 사항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[건물]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989-1외 1필지

고유번호 1241-2004-004276

1. 소유지분현황 (갑구)

등기명의인	(주민)등록번호	최종지분	주 소	순위번호
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(수탁자)	110111-1492513	단독소유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(대치동)	6

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갑구)

- 기록사항 없음

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을구)

- 기록사항 없음

[참 고 사 항]

- 가.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- 나.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- 다.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- 라.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'확인불가'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